

의안번호	2219535
의 퇴 인	곽규택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 계 번호	26D307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2명씩 증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416억 7,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조 3,464억 3,400만원(연평균 4,692억 8,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장 상임 변경 (안 제5조제3항)	433,781	446,841	460,603	474,795	489,432	2,305,452	461,090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7,896	7,917	8,148	8,387	8,634	40,982	8,196
합 계	441,677	454,758	468,751	483,182	498,066	2,346,434	469,28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3항 (위원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변경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3항 (위원장)	○	—
2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위원장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각 위원장의 직급을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이 법에 대한 다른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업무협조 대상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5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대법원의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대법원장의 보수를 참고하여 추정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각각 차관, 2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참고하여 추정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안, 의안번호 19468호)」 참고

- 비상임 위원장에게 지급되던 경비 중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안전검토수당, 출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제함
 -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비²⁾로,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라 해당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을 추계기간 동안 차감함
 - － 안전검토수당 및 출무수당 또한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은 안전별로 10만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무수당은 위원회 출석 시마다 8만원~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출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해당 지출감소액은 고려하지 않음
- 직책수행경비는 위원장 상근으로 변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위원장 비서실 인건비 등)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각 위원장의 비서실 인력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2]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른 비서실 인력(안)

구분	인력 규모(안)	
	현행(비상임 위원장)	개정안(상임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급 1명	1급 1명 3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각 위원회별)	—	5급 1명 9급 1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현행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하며, 그 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상임위원 증원 관련)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회별 2명씩 증원되므로, 증원되는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상임위원 지원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현행법 제12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무위원급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규정
 - 각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 및 1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소요액을 추정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2명 증원되는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소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2026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1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편성³⁾되어 있어, 상임위원 증원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추가재정소요로 보아 추계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3명의 비서실 인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4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별 3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건비 지출 소요액을 추정함⁴⁾
 - －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의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각 직급의 보수를 준용하며,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증원 인력에 대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3)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근거

4)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별도 지원 인력은 없음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자산취득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⁵⁾을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산출된 보수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안 제5조제3항)

- (위원장 인건비 등) 현재 비상임인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원장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대법원의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대법원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차관, 2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참고하여 추정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효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 추계
 -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라 기본경비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연간 3,48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효율,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2026.3.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3.0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5,6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추계기간 동안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기존 사무공간 및 사무용 집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업무공간 확보 및 자산취득 관련 경비는 본 추계에서 제외

[표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봉급	163,704
	수당	59,412
	합계	223,116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봉	151,149
	수당	13,800
	합계	164,949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봉	142,006
	수당	10,200
	합계	152,206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봉	81,351
	수당	5,400
	합계	86,751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수당에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포함, 시·도, 구·시·군, 읍·면·동 위원장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대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구분	1인당 보수 (a)	인원 (b)	연간 총액 (a×b)						
중앙	223	1	223	230	237	244	251	259	1,220
시·도	165	16	2,639	2,718	2,800	2,884	2,970	3,060	14,432
구·시·군	152	255	38,813	39,977	41,176	42,411	43,684	44,994	212,243
읍·면·동	87	3,555	308,400	317,652	327,181	336,997	347,107	357,520	1,686,457
보수 추정액				360,577	371,394	382,536	394,012	405,832	1,914,35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305억 9,800만원 등 5년간 2조 2,893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360,577	371,394	382,536	394,012	405,832	1,914,352
기관부담금	47,340	48,998	50,820	52,715	54,686	254,559
기본경비	22,716	23,398	24,100	24,823	25,567	120,604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차감 소요)	(35)	(35)	(35)	(35)	(35)	(174)
합계	430,598	443,755	457,421	471,515	486,051	2,289,341

주 1.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장 비서실 인건비 등)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각 위원장의 비서실 인력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6]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른 비서실 인력(안)

구분	위원장 비서실 인력(안)	
	현행(비상임 위원장)	개정안(상임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급 1명	1급 1명 3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6개 위원회 합)	—	5급 16명 9급 16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 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함
- 기본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고, 37명의 증원 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 소요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비서실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비서실 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현행(비상임)		개정(상임)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천원)
	직급	인원(명)	1인당 보수액(천원)	인원(명)	1인당 보수액(천원)	
보수	1급	—	—	1	160,954	160,954
	3급	—	—	1	138,147	138,147
	4급	1	117,733	—	—	(117,733)
	5급	—	—	18	86,751	1,561,518
	6급	—	—	1	66,217	66,217
	7급	—	—	1	50,346	50,346
	9급	—	—	16	35,953	575,248
	합계	1	—	38	—	2,434,697

주: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1~5급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비서실 인력 증원 관련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31억 8,300만원 등 5년간 161억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위원장 비서실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2,508	2,583	2,660	2,740	2,822	13,314
기관부담금	329	341	353	367	380	1,770
기본경비	158	163	168	173	178	839
자산취득비	188	—	—	—	—	188
합계	3,183	3,086	3,182	3,280	3,381	16,111

주 1.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상임위원 증원(안 제6조제1항)

- (상임위원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각 2명씩 증원되므로, 증원되는 상임위원의 보수, 기관 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각 상임위원의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 및 1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 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고, 증원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상임위원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9]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연봉	155,634
	수당	17,280
	합계	172,914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연봉	149,554
	수당	11,400
	합계	160,954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인원 및 보수 추정(2026년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증원 인원(명)	1인당 보수액(천원)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백만원)
중앙	장관급	2	172,914	346
시·도	1급	32 (16개 시·도×2명)	160,954	5,151
합계		-	-	5,49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 외, 상임위원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 소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
원에게 월 1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 직책수행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표 11]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시 직책수행경비 추가재정소요

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증원 인원(명, a)	1인당 지급액 (연간,천원, b)	연간 지급액 (백만원, a×b)
중앙	장관급	2	29,400	59
시·도	1급	32	12,000	384
합계		-	-	4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 증가하고 전체 위
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상임 위원 2명이 감소하게 되므로
1인당 월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⁶⁾
 -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58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시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3억 2,500만원 등 5년간 380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
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기준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기준표

지급대상	지급액
위원장	월 2,900,000원
상임이 아닌 위원	월 2,150,000원

[표 12]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5,661	5,831	6,006	6,186	6,371	30,056
기관부담금	743	769	798	828	859	3,997
기본경비	357	367	378	390	401	1,894
자산취득비	173	-	-	-	-	173
직책수행경비	443	443	443	443	443	2,214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차감 소요)	(52)	(52)	(52)	(52)	(52)	(258)
합계	7,325	7,359	7,573	7,795	8,023	38,07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상임위원 비서실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별 비서실 인력 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증원 인력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고, 총 6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비서실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비서실 정원이 별도로 없는 점을 참고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표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정원 및 보수 추정액(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정원(명)	1인당 보수	증원 인원(명)	보수 추가소요 추정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4급	1	117,733	2	235,466
	6급	1	66,218	2	132,434
	9급	1	35,953	2	71,906
	합계	3	-	6	439,806

주 1.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5급 이상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7,100만원 등 5년간 29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453	467	481	495	510	2,405
기관부담금	59	62	64	66	69	320
기본경비	29	29	30	31	32	152
자산취득비	30	—	—	—	—	30
합계	571	558	575	592	611	2,90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2명씩 증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416억 7,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조 3,464억 3,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장 상임 변경 (안 제5조제3항)	위원장 인건비	430,598	443,755	457,421	471,515	486,051	2,289,341
	비서실 인건비	3,183	3,086	3,182	3,280	3,381	16,111
	소계	433,781	446,841	460,603	474,795	489,432	2,305,452
상임위원 증원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 인건비	7,325	7,359	7,573	7,795	8,023	38,075
	비서실 인건비	571	558	575	592	611	2,907
	소계	7,896	7,917	8,148	8,387	8,634	40,982
합 계		441,677	454,758	468,751	483,182	498,066	2,346,43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